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험목적물의 임시 확대 지정 허용 등〉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32)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보험목적물의 임시 확대 지정 허용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태영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7. 11.
3. 회 부 일 : 2025. 7.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목적물은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빈발하면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이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농어업 경영의 회복력 또한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 발생 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목적물 확대를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해 복구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보험목적물의 임시 확대 지정 허용 등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농어업재해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의 심의를 생략하고 일정기간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매년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서천호의원안
제5조(보험목적물) ① (생략) <u><신설></u>	제5조(보험목적물) ① (현행과 같음)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어업재해가 발생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u> 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지정 기간, 절차, 적용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u>노력하여야 한다.</u>	③ ----- ----- <u>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목적물의 범위</u>

현행	서천호의원안
	<u>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목적물 임시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하였거나 진행 중인 농어업재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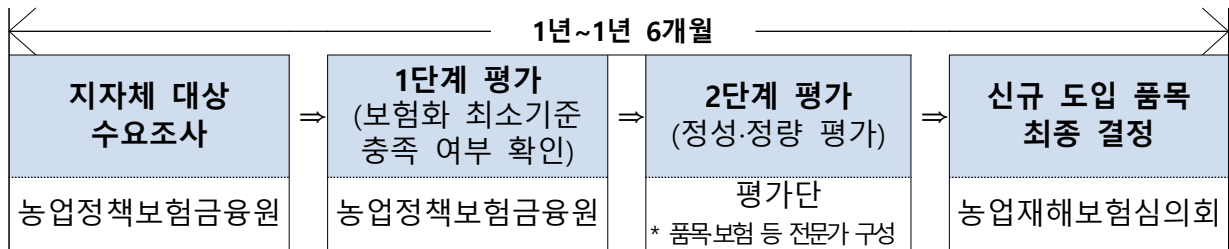
현행법 제5조1)는 보험목적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양식수산물의 경우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년마다 지자체 수요조사, 전문가 평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를 거쳐 신규 도입 품목을 선정 중이며, 이러한 절차는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됨.

1) 제5조(보험목적물) ①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2. 가축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 2) 이하에서는 농업재해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봄.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도입 절차 】



※ 자료: 농식품부 제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재해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일정기간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근 한반도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2024년의 경우 대설·한파(1~2월), 일조량 부족, 우박(5월), 집중호우(7월, 8월), 폭염 및 이상고온(7~9월), 대설(11월) 등 농업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³⁾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기존 보험목적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목적물 임시 지정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먼저,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목적물을 확대 지정하여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것은 농업재해보험상품의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3)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 관계부처 합동, 2025년, p.64

즉, 농업재해보험상품은 「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4)에 따른 손해 보험상품으로, 손해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제로 함.

그런데 개정안은 이미 발생한 농업재해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목적물을 확대 지정하여 보험상품을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과 부합하지 않음.

참고로, 최근 개정('25.8.14/'26.8.15 시행 예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를 명문화한 바 있음.

다음으로, 매년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역시 최근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정부에 대하여 1년마다 보험목적물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⁵⁾.

문 의 처
02)6788-5415

4)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5)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험목적물 범위 확대와 관련한 조항 논의 시 보험목적물 ‘재검토’를 보험목적물 범위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음.

* '25.1 8. 본회의에 재의를 부친 결과 부결된 대안과 관련한 소위임.